

단독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 지원 공고

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”의 단독주택의 인증 및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유도를 위해 「단독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 12. 01.

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

- 다 음 -

1. 추진 목적

-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이 모든 용도 건축물로 확대('13.9)됨에 따라, 인증참여가 저조한 단독주택의 인증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
- 저에너지 건축물 구현을 위한 설계·시공 및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

2. 지원 대상 및 조건

- (지원대상) 「건축법」 제11조·제14조에 따른 허가·신고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, 「주택법」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
- (지원자격) 신청 단독주택의 건축주 또는 건축물 소유자, 설계자,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

※ 인증신청은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,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주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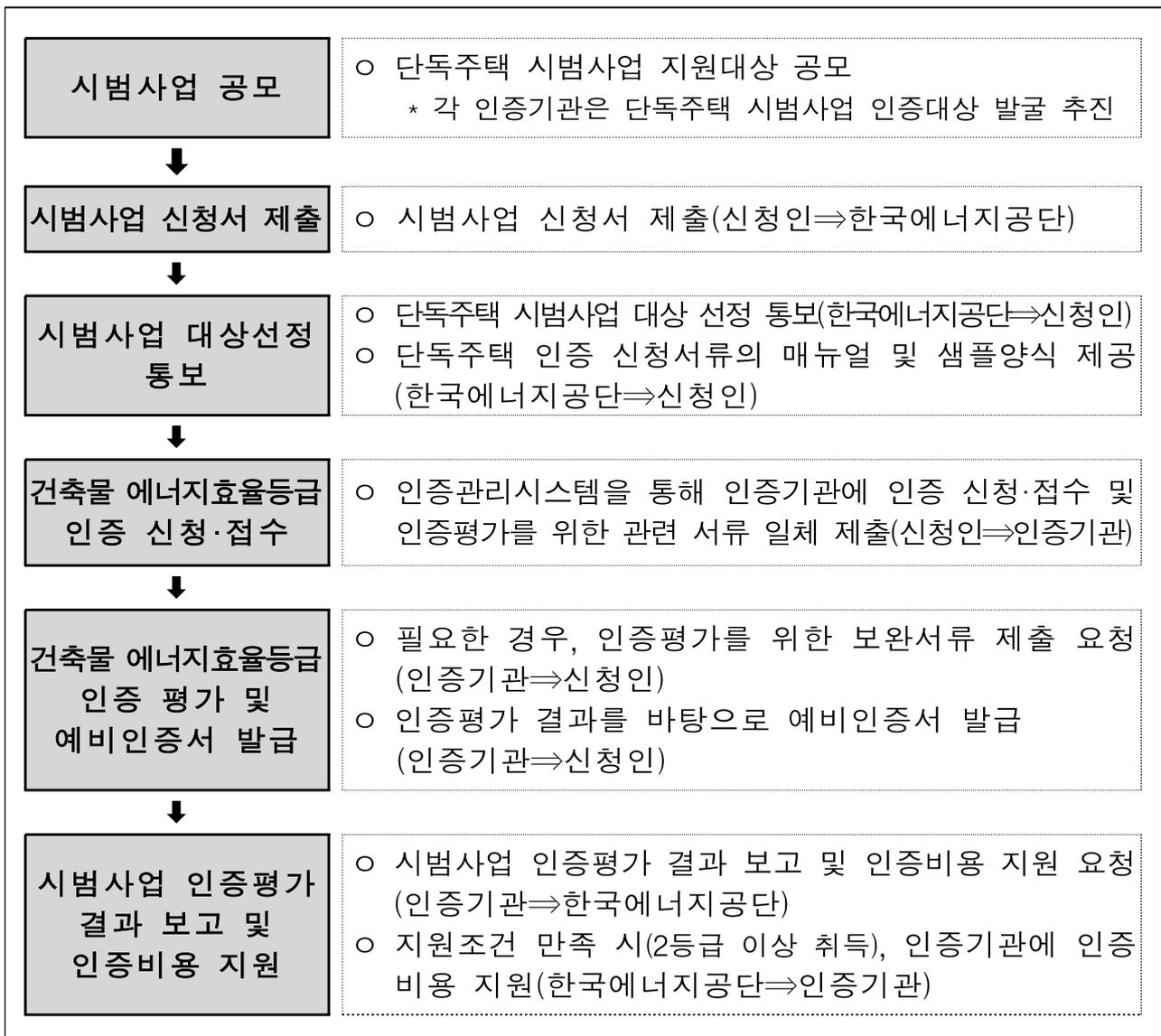
- (지원조건)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(예비인증) 신청 후, 일정 등급 이상(2등급) 취득한 단독주택 건축물에 한해 비용지원

3.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

- (사업기간) 공고일 ~ 지원금액 예산 소진 시까지
- (지원금액) 총 25,000천원*(단독주택 100건)

* 시범사업에 한하여 인증수수료 25만원/건을 시행

4. 시범사업 추진 절차



5. 시범사업 신청인 유의사항

- 시범사업 신청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며, 단독주택 개별 건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(단지는 개별 단독주택으로 나누어 신청)
- 인증비용은 공단이 인증기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신청인은 인증 신청 후,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시범사업 수행
- 인증비용 지원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에 해당하며, 본인증은 인증비용 지원 불가 대상임
- 공단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예비 인증 신청 후, 주거용 건축물 인증 등급의 2등급 이상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인증비용을 지원하며, 그 외의 등급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인증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함
- 신청인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와 관련하여, 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」 및 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」에서 규정하는 신청서류 등을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
- 신청인은 인증평가와 관련하여,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, 이를 거부할 시 시범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6. 신청서 제출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공고일로부터~
- (신청방법) E-mail로 제출 (jsseo@energy.or.kr)
- (문의처) 건물수송에너지실 서재상 대리 ☎ 031-260-4410

[붙임] 단독주택 시범사업 신청서 1부.

